

#### 4) 자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

○ 소요예산 : 1,680백만원

[단위 : 천원]

합계	산출내역					
	설계용역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기자재비
1,680,497	92,077	1,385,707	15,422	50,291	37,000	100,000

○ 예산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내역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총 액	1,680,497	323,516	161,758	1,195,223
공사,용역비	1,580,497	318,516	159,258	1,102,723
기자재비	100,000	5,000	2,500	92,500

※ 2019년 1분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상정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교부 지침」에 의거, 확충심의 결과 국·시비 확보)

## 7. 검토의견

### 가. 염리동제1경로당 대체신축 및 토지 매입

○ 본 관리계획안은

1957년에 건축되어 노후화된 염리동제1경로당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경로당 대체신축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검토의견으로는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등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여가문화 증진공간이 필요함.

- 하지만, 염리동에 위치한 염리동제1경로당은 6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시설여건이 열악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공간 협소로 인한 이용 불편으로 시설 개선 요구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변 토지를 정리하여 넓고 쾌적한 시설로 용적률을 높여 신축한다면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는 물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가복지시설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인근 경로당 통합운영으로 구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염리동제1경로당 대체신축 및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사전 절차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완료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보조사업 증가로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시설이 확장되는 만큼 완공 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부담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경로당이 사랑방이 아닌 여가문화증진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인근 경로당 통합 운영 시 기존 경로당 회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지역 이기주의 발생으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 ○ 본 관리계획안은

준공 된 지 24년이 경과하여 노후 된 성미어린이집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 검토의견으로는

- 통계청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5명까지 낮아진 국내 합계 출산율이 올해에는 1.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98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일 때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인구 감소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력 공급 및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작용이 더는 어렵고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
- 이처럼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구조에 있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보육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에 반하여 성산1동 어린이집은 보육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성미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152명의 입소자가 대기하고 있으며, 보육수급률은 16개동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에 처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부지면적이 좁고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보육실이 부족한 성미어린이집을 인접한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대체신축 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보육수요를 다소 소화하고 주민 민원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한 어린이집 대체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교환부지 중 구유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당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평가되어 있지만 추후 미래가치 상승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토지교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빈틈없는 재원조달 계획으로 투입되는 총예산에 포함된 국·시비 보조재원 확보에도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공사기간 동안 기존 보육시설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보육시설 확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1.동별 어린이집 보육수급률 및 정원충족률

2018. 9. 1. 기준(방과후교실 제외)

동명	영유아 수 (A)	보육 수요 (B)	어린이집 정원 (C)	보육 수급률 (C/B)	어린이집 현원 (D)	정원 충족률 (D/C)	국공립 정원 (E)	국공립 수급률 (E/B)	어린이집 이용률 (D/A)
계	16,689	8,879	9,395	105.8	8,219	87.5	4,369	49.2	49.2
공덕동	1,676	897	753	84.0	644	85.5	427	47.6	38.4
아현동	1,922	1,031	886	85.9	695	78.4	461	44.7	36.2
도화동	1,041	554	508	91.6	437	86.0	262	47.3	42.0
용강동	1,295	681	438	64.3	407	92.9	246	36.1	31.4
대흥동	252	130	208	159.8	170	81.7	208	159.8	67.5
염리동	371	196	310	158.4	226	72.9	138	70.5	60.9
신수동	1,016	532	456	85.7	446	97.8	275	51.7	43.9
서강동	1,172	620	723	116.6	659	91.1	414	66.8	56.2
서교동	714	381	352	92.5	322	91.5	315	82.7	45.1
합정동	1,061	607	420	69.1	360	85.7	243	40.0	33.9
망원1동	777	413	531	128.7	501	94.4	191	46.3	64.5
망원2동	841	443	564	127.2	533	94.5	126	28.4	63.4
연남동	508	273	447	163.6	374	83.7	75	27.5	73.6
성산1동	691	363	257	70.9	251	97.7	49	13.5	36.3
성산2동	1,778	944	1,249	132.3	1,127	90.2	380	40.3	63.4
상암동	1,574	813	1,293	159.1	1,067	82.5	559	68.8	67.8

※ 보육수요 = (영아인구수×63.1%) + (유아인구수×43.6%) ← 서울시 보육수요율 준용

※ 보육수급률 = (어린이집 정원÷보육수요)×100

## 2. 어린이집 총괄현황 : 211개소 (구립 68, 민간 143)

해당동	계	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서강	서교	합정	망원1	망원2	연남	성산1	성산2	상암
총계	211	25	24	16	15	6	8	13	20	14	13	16	14	10	8	34	43
구립	68	7	6	3	4	3	2	3	7	6	3	3	2	1	1	4	13
민간	143	18	18	13	11	3	6	10	13	8	10	13	12	9	7	30	30

※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인 행정동 : 연남동, 성산1동(2개동)

##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 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 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3, 2015.11.19>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2.2.23, 2015.11.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 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9>

④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 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5.11.19>